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주소정보 생활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구미시에
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
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

중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
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미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
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
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

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
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구미시 주소정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구미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미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주소정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 ⑤ 생략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됨(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손해배상 공제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현재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 공제회비 납부하고 있어 도로명판 수량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는 있으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없음.

내 용	납 부 금 액		비 고
	2020	4,100천원	
도로명판 공제회비 가입비	2021	4,743천원	

4. 작성자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보 이정화 (054-480-6392)

소 관 부 서		토지정보과
입 안 자	과 장	백 창 운
	담 당	전 경 인
	담 당 자	이 정 화 (480-6392)